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준수사항 안내

〈보건의료정책과〉

□ 주요 준수사항

○ 등록요건은 상시 유지돼야 하며, 사업 지속시 등록만료 전 갱신 신청

- 1)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증권은 항상 유지되어야 하며, 기한 만료 전 갱신하고, 이를 외국인환자 유치시스템에 변경 신청
- 2)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유효기간은 3년으로, 만료일 이후에도 유치업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만료 전 등록 갱신 신청하여야 함

※ 갱신 신청기간 : 등록만료 2개월 전부터 최소 20일전까지 신청

- 3) 명칭,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청(변경 1개월 이내)
- 4)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종료한 경우 철회(폐업) 신청

○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함

- 1)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www.medicalkorea.or.kr)'으로 보고

※ 당해년도 수시보고(분기·반기 등) 가능하며, 유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으로 시스템에 보고를 완료하여야 함

- 2) 기한 내 미보고시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시정명령을 이행 안하는 경우 등록취소 대상이 됨

○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조치의무 및 과도한 수수료 부과 금지

- 1) 기관 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게시할 것
- 2) 기관 내 외국인환자 권익보호에 대한 사항을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

※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을 외국어로 게시하고 의료기관 내 출력물로 비치하여야 함

- 3)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수수료율 범위 내에서 유치기관 간 결정할 것

※ 수수료율 범위 :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병원: 20%, 의원: 30%

대표적인 등록 취소 사례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1.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2회 받은 후, 새로운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2. 유치의료기관이 유치업자가 아닌 자에게 진료계약을 소개·알선받은 경우
3. 유치업자가 유치의료기관이 아닌 자에게 진료계약 소개·알선한 경우
※ 유치기관 등록을 아니한 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기타 안내

-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 주소 : www.medicalkorea.or.kr
- 기타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사항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